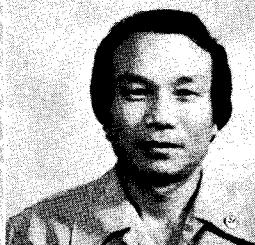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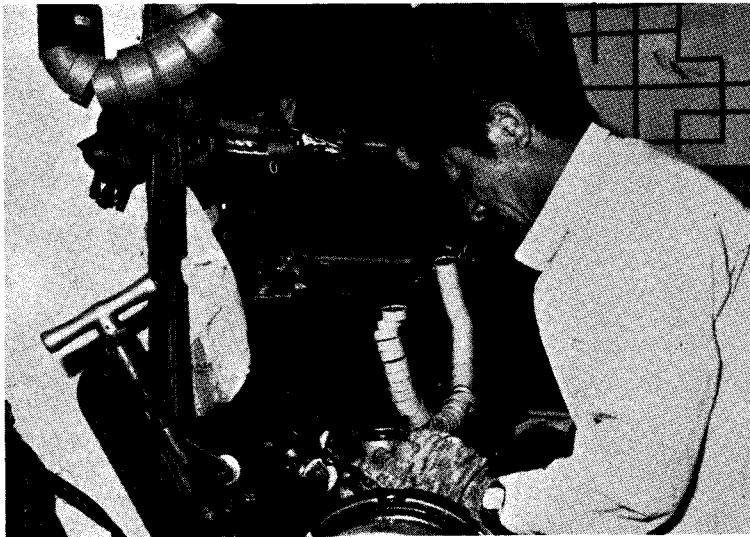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김홍수

관악 건축공사 대표
온돌기능사 2급



온돌인의 정당한 시공권 보장을 요구한다

건축법 제 23조 3항에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온돌은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특별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자의 자격과 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입법 명시 되어있으며, 또 1975년 12월 30일 연탄온돌의 구조·재료 및 시공지침(표준온돌 시공법)을 한국공업규격(KSF 7010)으로 제정·공포한 것을 보면 온돌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분의 일종인 온돌시공

과는 무관한 열관리·원동기 시공기능사에게도 온돌시공을 지정케 함은 법리해석에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온돌시공은 건축제도, 건축구조, 시공, 난방 및 온수보일러 설치 전문가인 온돌기능사에게 주어짐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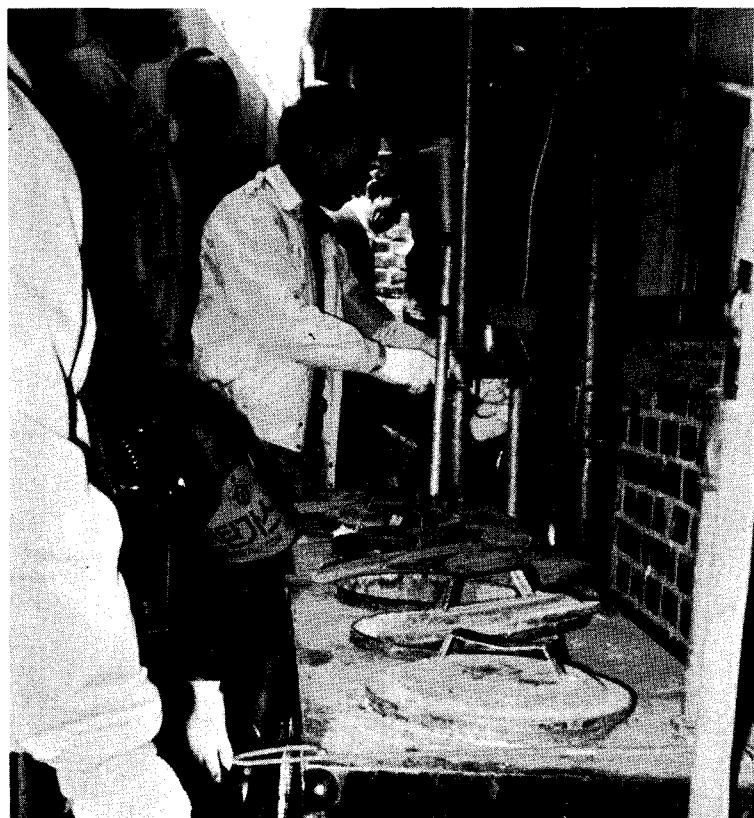
열관리나 원동기시공 기능사는 2차산업 분야의 건물 혹은 기계산업의 열관리, 원동기의 제작, 운전, 시공 등에 전담되는 기능공으로 생각되는 바, 소규모 주택난방 시공에는 위에 열거한 건축상식을 전수한 온돌기능공에게 전담케 하는 것이 건축기술 행정에 타당한 처사라고 여겨지며 이렇게 오늘 날까지 연탄의 연소관계,

굴뚝의 설치, 급환기, 보온, 단열처리 관계 등을 무자격 혹은 비전문가가 시공함으로 인해 연탄을 효율적으로 이용치 못하고 미연소로 인한 연탄낭비와 공해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해서 비전문가가 온돌시공을 하게 되었을까?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시공자의 자격과 방법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법에 근거를 둘 때, 그 당시에는 온돌기능사의 양과 질이 부족한 상태로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비전문가를 우선 담당부서인 산업과에서 열기기사용업체로 지정해 오늘에 이르도록 주택난방 시공권을 주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온돌공들은 현재 온돌시공에 있어서 2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건축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법리해석 잘못으로 인해 국가에서 공인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능사에게 주객전도 되어 온돌인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자손이나 후배들에게 온돌업을 권장하겠는가?

모든 기능인이나 직장인이 그 시대에 인기가 있고 안정된 생업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욕구인 바, 이렇게 권익을 침해당하여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면 앞으로 온돌공들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점차 난방열매체가 유



류에서 가스, 가스에서 전기, 그리고 전기에서 태양열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오늘 날 온돌인의 위치가 풍전등화같은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 온돌인들은 온돌공의 종파부족과 미흡한 교육수준으로 인해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전무하다 싶이 하여 올며 겨자먹는 식으로 오늘날까지 참아 왔으나, 모든 온돌인들의 유형무형(심적물적)의 피해는 전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1만2천여명의 온돌기능인이 전국 각지에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사단법인체를 설립하였고 고학력 온돌인들도 많이 탄생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와 소외를 당할 필요는 없다. 1만2천여명의 온돌인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에게도 정당한 온돌인의 시공권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온돌인의 모체인 온돌시공협회는 법인체로 승격된 지금 상태에서 안주하지 말고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에 앞장서 매진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능공 우대 정책을 실천함은 물론 국민의 안락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전술한 부당한 처사를 공평과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수정하여 모든 온돌기능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